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0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5. 강준현의원 등 27인

나. 회부일자 : 2024. 6.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8. 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9. 24.)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9. 25.)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준현 의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년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성완)

세종지방법원 신설은 ① 신설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②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현황과 개선의 정도, ③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나 사건 수에 미치는 영향, ④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상징성, ⑤ 지원 또는 지방법원 설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⑥ 신규 법원 신설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종지방법원이 신설되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거의 모든 권역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설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인구 및 예상 사건 수 규모는 18개 지방법원 중에서 가장 낮은 춘천지방법원과 유사하여 높지 않은 편임.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상징성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을 폐지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던 협의이혼사건 등의 관할이 대전가정법원으로 변경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데, 이 경우 협의이혼사건 등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세종지방법원 신설 이전보다 오히려 악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법 시행일을 2026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사 신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조금 더 유예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제21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5. 7.)는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의안번호 제2109202호,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한 후,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되, 시행일은 2031년 3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던 바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 김승원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년보호사건은 현행과 같이 대전가정법원이 관할하되, 나머지 가사사건들은 세종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조정하고, 법원 신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31년 3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년보호사건은 현행과 같이 대전가정법원이 관할하되, 가사·가정보호·가족관계등록사건은 세종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조정하고, 시행일을 2031년 3월 1일로 연기함(별표 5 및 안 부칙 제1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3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란 중 “금산군”을 “서천군”으로 한다.

별표 5 중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		대전광역시·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홍성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공주	공주시·청양군
	논산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산	서산시·당진시·태안군
	천안	천안시·아산시

안 부칙 제1조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대전지방법원 본원”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대전가정법원 본원”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2026년</u>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u>2031년</u> ----- -----.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u>2026년</u>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세종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① <u>2031년</u> ----- ----- ----- ----- -----.
② 이 법 시행으로 <u>2026년</u> 3월 1일부터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u>2026년</u> 2월 28일 현재 <u>대전지방법원 본원</u> 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 <u>2031년</u> --- ----- ----- <u>2031년</u> --- ----- <u>대전지방법원 본원</u> <u>및 대전가정법원 본원</u>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세종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세종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
--------	---------

별표 2 중 대전지방법원란의 세종특별자치시·군법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		대전광역시·금산군
	홍성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공주	공주시·청양군
	논산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산	서산시·당진시·태안군
	천안	천안시·아산시

별표 3의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지방법원란 다음에 세종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	--	---------

별표 5 중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		대전광역시·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홍성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공주	공주시·청양군
	논산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산	서산시·당진시·태안군
	천안	천안시·아산시

별표 7 중 대전지방법원란의 세종특별자치시·군법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3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3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세종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31년 3월 1일부터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대전가정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